

「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에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제3조)
-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·추진계획·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~6조)
-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제·개정 등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·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~9조)
-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- 구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~제19조)
-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(안 제20조)

-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(안 제21조)
-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사항 (안 제2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
- 부서검토: 정책기획과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기 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에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1992년 브라질 리우회담의 ‘의제 21’로 지속가능발전이 채택된 이후,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을 핵심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제도화하는 등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2008년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을 제정하는 등 정책 추진에 대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.

- 이에 본 조례안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여,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적인 세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시 자질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을 업무에 최우선순위로 두어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